#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30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전진숙・이수진・허종식

김정호 • 이인영 • 김남희

정을호 • 권칠승 • 윤후덕

임호선 · 박희승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 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개편하고, 노인돌봄 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자녀 당 12개월로 하며, 산입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 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출산"을 "육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자녀당 12개월"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항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노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 가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장기요양급여를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기간은 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③ 가족의 범위, 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추가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이하 "간호·간병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 간호 ·간병등을 제공한 기간
  -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이하 "보호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자: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 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③ 가족의 범위, 간호·간병등을 제공한 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추가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9조"를 "제19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

4"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가 없는 경우 : 종전의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②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으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 제19조(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 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u>가 가 산입) ① 자녀-----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 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 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 12개월----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로 산입한다. <후단 신설> 다 -----. 이 경우 자녀 수의 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 <단서 삭제>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삭 제> <삭 제>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노인돌봄에 대한 가입 <신 설>

기간 추가 산입) ①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 에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 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 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 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 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 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2 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③ 가족의 범위, 기간의 구체적 인 산정 방법 등 추가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장애인돌봄에 대한 가 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 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이하"간호·간병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 간호·간병등을 제공한 기간
-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2 항에 따른 보호수당(이하 "보 호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 는 자: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 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③ 가족의 범위, 간호·간병등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 저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 1. (생략)
-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u> </u>	0 5	<u> </u>	<u> 1산의</u>	구체적	<u>인 산</u>
<u>정</u>	방기	법	등	추가	산입에	필요
<u>한</u>	사	항은	<u> </u>	대통령	형령으로	정한
<u>다.</u>						
1513	조(기	[] 본	연-	금액)	①	
					,	
1.	(혀	행고	} {	같음)		
	` L					
2.						

가.·나. (생 략)
다. <u>제19조</u>에 따라 추가로 산 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 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 정한 금액

$2 \cdot 3$ (	생 략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제19조, 제19조의3 및 제</u>
19조의4
②・③ (현행과 같음)